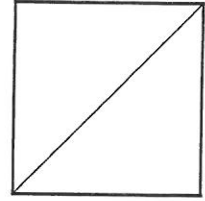


(붙임)

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8. 6. 7.

의  
결  
사  
항

##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(안)

한국신용정보원  
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
회의안건

제 출 자	위 원 장
제출연월일	2018. 6. 7.

## 1. 의결 주문

-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 이유

- 소액연체정보 공유예외 등록금액 변경 및 재창업·재도전 기업인 정보 CB사 제공을 위하여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(이하 “규약”)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 내용

### 소액연체정보 공유예외 등록금액 변경(관련 조문 : § 15)

- (개정취지)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는 소액연체정보(50만원 이하)의 등록금액을 경제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불이익을 완화\*하고자 함

\*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(금융위, '18. 1. 30.)

- (개정내용) 현재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는 소액연체정보(50만원 이하)의 등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변경

- (시행일) '18. 12. 3.부터

### 재창업·재도전 기업인 정보(등록코드1601) CB사 제공(관련 조문 : <별표 1> 신용정보관리기준)

- (개정취지)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창업·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정보(등록코드: 1601)를 CB사에도 제공하여 이들에 대한 신용평가지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재기를 지원\*하고자 함

\* 「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(금융위, '17. 4. 20.)」 관련 후속 조치

- (개정내용) 현재 정보등록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회복위원회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에만 제공하고 있는 재창업·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정보를 CB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

- (시행일) '18. 6. 7.부터

#### 4. 참고사항

- **관계조문**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, 제26조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제1항

##### 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**제25조의2(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)**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
2.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
3. 신용정보의 가공·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4.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
5. 다른 법령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**제26조(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)**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
2. 신용정보의 집중관리·활용에 드는 경상경비,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
3.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
4.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·활용에 필요한 사항

##### ◇ 신용정보업감독규정

**제17조(신용조회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·변경·관리)**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2조제1항의 신용정보별로 등록·변경·관리 기준을 마련한다.

